#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13

발의연월일: 2024. 7. 9.

발 의 자:조승환·서일준·정희용

이성권 · 김태호 · 김성원

김도읍 • 안철수 • 권영세

김 건(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부당해고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을 사용자가 불이행한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둠 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고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러 한 조항의 적용이 누락되어 있어 선원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 이 있음.

이에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여 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 1항).

법률 제 호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 33조"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원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	
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	<u>제8</u> 조부터 제10조까
<u>지</u> ,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	지, 제33조
107조(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	
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	
다), 제110조(제10조와 제74조	
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	
우로 한정한다)를 적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